

# 환경배상책임보험에서 손해방지의무 이행에 관한 고찰\*

김 은 경\*\*

<차례> \_\_\_\_\_

- |                               |                             |
|-------------------------------|-----------------------------|
| I. 들어가는 말                     | III. 환경배상책임보험에서의 손해방지의무와 비용 |
| II. 환경배상책임보험에서 환경오염피해와 손해의 의미 | IV. 맺는 말                    |
- 

주제어 : 환경배상책임보험, 환경오염피해구제법, 기업보험, 손해방지의무, 손해방지비용

<국문초록> 환경오염피해구제법은 무과실책임의 원리 하에 연대책임 및 인과관계추정 법리를 체계화하여 피해자의 증명책임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고, 환경오염의 위험성이 높은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배상책임의 이행을 위한 재무적 수단을 확보하기 위하여 환경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도록 방향을 제시하였다. 또한 환경오염피해로 고통을 겪는 국민을 구제를 통해 지원함으로써 피해구제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것에도 동법과 환경배상책임보험의 제도적 취지를 엿볼 수 있다.

환경배상책임보험은 의무보험이고 기업보험이다. 환경배상책임보험의 취지는 유해화학물질로부터 생겨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보험이다. 환경배상책임보험에 의하여 보험자는 환경오염피해로 인하여 제3자에게 부담하게 될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한다.

환경오염피해가 발생하면 그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해서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손해방지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환경배상책임보험의 경우도 상법에서 규정하는 다른 손해보험과 동일하다. 다만 환경배상책임보험에서는 손해방지의무 이행에 따른 손해방지비용을 보험금액인 보상한도에서 지급하는 방식을 선택하고 있다. 환경배상책임보험은 기업보험이므로

\* 본 논문은 2019년 한국외국어대학교 교내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작성되었음.  
환경배상책임보험에 대한 실무 및 보험법적 논의과정의 장을 마련하고 관련 자료를 제공해주신 환경산업기술원에 감사함을 전합니다. 본 논문은 환경배상책임보험에서의 손해방지의무의 이행과 그로 인한 비용에 대한 것을 연구내용으로 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례가 많이 축적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현장에서 손해사정을 하는 실무자들과의 토론과정에서 습득한 지식을 바탕으로 한 제한된 시각에 불과하므로 추후 사례가 모이는 대로 연구를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법학박사  
- 논문접수일(2020.01.21), 심사개시일(2020.01.28), 게재확정일(2020.02.23)

상법 제663조가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환경배상책임보험약관의 적법성에는 문제가 없다. 그리고 환경배상책임보험에서 무엇을 손해방지비용으로 확정할 것인지는 그 사안마다 다르다. 보험자입장에서 오염피해사고에 대한 탐지비용, 굴착비용, 유출된 유류의 제거비용은 손해방지비용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통상적으로 방제비용이라고 하는 것도 그것이 사업장 외에서 이루어지는 경우의 방제는 복구비용일 가능성이 높다. 그러므로 사실관계를 일일이 따져 구체적으로 손해방지의무 이행에 의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여 손해방지비용에 해당하는 것인지를 판단해야 한다.

## I. 들어가는 말

환경배상책임보험은 2014년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이하 환경오염피해구제법)<sup>1)</sup>이 제정되면서 환경오염 위험성이 높은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에게 보험가입이 의무화되었다. 환경배상책임보험은 환경오염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문제의식이 있었으나, 2012년 구미에서 불산 누출사고가 발생하면서 그 위험성에 대한 우려와 함께 환경오염사고가 가져올 대형의 피해규모의 심각성을 새롭게 인식하게 되었다. 이로 인하여 환경오염사고로 인한 재난에 대한 새로운 문제가 제기되며 관련법의 제정 논의가 가속화되었다. 해외에서도 대형의 환경오염사고를 맞닥뜨리면서 이를 대처하기 위하여 법제정을 서둘렀다. 독일은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책임을 영업배상책임보험(Betriebshaftungsversicherung)에서 부보하던 것을 1986년 산도스사(Sandoz-Konzern)의 오염사고를 계기로 환경책임법(Umwelthaftungsgesetz)<sup>2)</sup>이 1991년에 제정되었고, 미국은 그보다 더 이른 1980년 환경책임법(Comprehensive Environmental Response, Compensation, and Liability Act of 1980 (CERCLA))<sup>3)</sup>인 소위 슈퍼펀드법(Superfund law)이 제정되었는데 이는 Love Canal 오염사고로 촉발된 것에서 기인한다.

환경오염피해구제법은 무과실책임의 원리 하에 연대책임 및 인과관계추정 법리를 체계화하여 피해자의 증명책임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고, 환경오염의 위험성이

1) 동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환경배상책임보험 가입의무화는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됨.

2) 10. Dezember 1990 (BGBl. I S. 2634).

3) United States. Comprehensive Environmental Response, Compensation, and Liability Act of 1980. Pub.L. 96 - 510, approved December 11, 1980. 42 U.S.C. § 9601 *et seq.*

높은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배상책임의 이행을 위한 재무적 수단을 확보하기 위하여 환경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도록 방향을 제시하였다. 또한 환경오염피해로 고통을 겪는 국민을 구제를 통해 지원함으로써 피해구제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노력도 덧붙였다.

환경배상책임보험은 소위 정책보험으로서 환경오염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기업보험이다. 환경오염피해가 발생하면 그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해서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손해방지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환경배상책임보험의 경우도 상법에서 규정하는 다른 손해보험과 동일하다. 다만 환경배상책임보험에서 환경오염피해의 개념에 근거해서 손해의 의미를 정리해야 손해방지의무 이행에 따른 손해방지비용을 구체화하여 확정할 수 있다. 환경오염피해의 사고와 보험의 부보대상 여부를 확정하는 일이 꽤 복잡하기 때문이다. 사고마다 담보하는 내용이 다르며 손해배상금과 긴급방제의 특성상 손해방지비의 구분도 사고마다 차이가 나는 것에 기인한다. 이에 환경배상책임보험법상 환경오염피해와 손해의 의미를 확인하고 손해방지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 생겨나는 문제점을 고찰하고자 한다.

## II. 환경배상책임보험에서 환경오염피해와 손해의 의미

### 1. '환경오염피해'의 의미

#### (1) 환경오염피해구제법상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정의

환경책임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는 환경오염피해구제법에서 배상 및 구제의 대상으로 삼은 환경오염피해란 시설의 설치·운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소음·진동,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인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정신적 피해를 포함한다) 및 재산에 발생한 피해(동일한 원인에 의한 일련의 피해를 포함한다)를 말하되, 해당 사업자와 그 종업원이 업무상 받은 피해는 제외한다(제2조 제1호)고 한다.

환경오염피해구제법에서 말하는 환경오염의 적용대상은 대기오염, 수질오염, 해양오염, 소음 및 진동, 지반침하 등이다. 적용대상이 되는 시설은 동법 제3조에

따라 대기오염시설, 폐수배출시설 및 폐수무방류배출시설, 폐기물처리시설, 건설 폐기물처리시설, 기축분뇨배출시설,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유해화학물질 영업자 및 취급업자, 소음·진동배출시설, 잔류성 유기오염물질배출시설, 해양환경오염시설 및 기타 시행령으로 정하는 시설이 해당된다. 다만 동법이 적용되는 시설을 정함에 있어서 이를 확정하지 않고 시행령과 타법에 연동시킴으로써 그 적용범위가 확대될 여지가 있어서 비판이 제기되기도 한다.<sup>4)</sup> 즉 환경오염피해구제법 제3조 제10호는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시설 중 하나로 '해양환경관리법 제2조 제17호에 따른 해양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규정하거나 같은 조 제11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라고 정함으로써 경우에 따라 대통령령을 개정하여 적용범위를 확대할 수 있는 여지를 열어놓고 있다. 그러므로 이법이 적용되는 시설이 확정적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고 그 밖의 대통령령이나 타법의 시행령 등을 통해 시설을 정하도록 하는 방식은 명확성의 원칙이나 포괄위임입법 금지원칙에 반할 수 있다.

환경오염피해구제법의 적용대상 사업자는 시설에 대한 사실관계에 있는 소유자, 설치자 또는 운영자로 국한하고 있어서 미국의 슈퍼펀드법에서와 같이 오염책임자범위를 확대하고 있지 아니하는 것<sup>5)</sup>이 특징이다. 또한 동법에서 정하는 책임은 시설 소유자가 시설을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에 기초하여 인정되는 상태 책임에 해당한다<sup>6)</sup>. 소위 시설로부터 발생한 환경오염피해에 대하여 동법 제6조에 의거하여 사업자의 무과실책임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른바 '행위책임'이 아닌 '시설책임'을 인정한 것이다.<sup>7)</sup>

환경오염피해의 범위는 적용대상 시설의 설치나 운영으로 인하여 타인의 생명, 정신적 피해를 포함한 신체에 대한 피해, 재산피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종합하면 환경오염피해가 되려면, ① 시설의 설치·운영, ② 대기오염, 수질오염, 해양오염, 소음·진동, 그 밖에 대통령령<sup>8)</sup>으로 정하는 환경오염의 발생 및 ③ 생명·

4) 전경운, 전계 논문, 206면.

5) 이기형, 환경오염리스크관리를 위한 보험제도 활용방안, 보험연구원 정책연구자료, 2008.2. 82면.

6) 안경희, "환경오염피해구제법의 주요 내용 분석", 민사판례연구 39권, 2017.2, 981면; 김홍균,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의 평가와 향후 과제", 환경법연구, 제37권 제2호, 2015, 145면.

7) 전경운, "환경오염피해구제법상 사업자의 무과실책임", 홍익법학 제17권 제2호(2016), 202면; 안경희, "사업자의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무과실책임", 경희법학 제50권 제4호, 2015. 12. 55면; 김홍균, 전계 논문, 145면.

신체 및 재산에 대한 피해발생이라는 세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환경오염피해와 관련하여 환경오염피해구제법 제14조에서는 ‘시실로 인하여 발생한 환경오염피해가 동시에 「자연환경보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자연환경이나 같은 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자연경관의 침해를 발생시킨 경우 피해자는 해당 사업자에게 원상회복을 요청하거나 직접 원상회복을 할 수 있다. 즉 피해자가 직접 원상회복을 한 때에는 그에 상당한 범위에서 해당 사업자에게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 자연환경이나 자연경관의 침해가 생긴 경우 피해자는 사업자에게 원상회복청구권을 행사하거나 직접 원상회복을 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에서 자연환경이나 자연경관의 침해는 피해자라고 하는 개인적 이익침해가 수반된 경우에 한하여 원상회복이 인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 소유권에 대한 침해를 야기하지 않는 생태계나 자연환경의 침해, 기후변화 등과 같은 일반적 자연환경피해를 대상으로 하는 원상회복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환경오염피해라고 할 때 자연환경이나 자연경관의 침해는 근본적으로는 이 범위 내에서 논의의 확대를 필요로 하는 부분이다.

환경오염피해구제법 외에 환경오염에 대하여 정의를 하고 있는 법에는 환경정책기본법이 있다. 환경정책기본법에는 환경에 대한 개념을 도입하여 동법 제3조에서 환경을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으로 나누고 자연환경이란 지하·지표(해양을 포함한다) 및 지상의 모든 생물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비생물적인 것을 포함한다 자연의 상태(생태계 및 자연경관을 포함한다)을 자연환경으로, 대기, 물, 토양, 폐기물, 소음·진동, 악취, 일조(日照), 인공조명, 화학물질 등 사람의 일상생활과 관계되는 환경을 생활환경이라고 하여 이러한 환경이 오염되는 것을 환경오염이라고 정한다. 즉 동법 제3조 제4호에서 ‘환경오염이란 사업활동 및 그 밖의 사람의 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방사능오염, 소음·진동, 악취, 일조 방해,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등으로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고 정하여 사업활동 및 사람의 활동을 매개로 하여 생기는 오염피해 전반으로 확대될 수 있어 환경오염피해구제법에서 정하고 있는 환경오염피해와는 그 적용대상의 범위가 다르다.

8) 환경오염피해구제법 시행령 제25조(환경오염피해의 원인) (대통령령 제28966호, 시행 2018. 6. 13.)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인”이란 진동이 그 원인 중 하나가 되는 지반침하(광물 채굴이 주된 원인인 경우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 (2) 판례에 따른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정의

환경오염피해구제법에 규정된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정의를 적용시키는 것만으로 특정 사건이 환경오염피해 사고에 해당하는 것인지를 확정하는 것은 그다지 쉬운 일이 아니다. 환경배상책임보험이 의무보험으로서 유해화학물질을 다루는 사업자에게 계약체결의 의무가 부과된 지 채 3년 정도밖에 지나지 않아 그 사이 기본적으로 정확한 위험요율의 기준이 될 만한 통계자료가 쌓였다거나 다양한 판례가 형성될 여지는 없었다. 그러나 최근 비록 하급심이지만 환경책임에서 말하는 환경오염피해 여부를 판가름하는 판례가 등장하였는데 이는 환경오염피해를 이해하는 하나의 판례로서 그 자체로 의미가 있어 보인다.

해당 건의 사고경위는 다음과 같다.

- ① A전자는 자신이 사업활동을 하는 건물의 2층에 있는 염산 옥외저장 탱크에서 건물 내부의 염산저장 탱크로 염산을 공급하던 중
- ② 작업 담당자가 저장탱크의 최대용량을 초과하지 않도록 적절한 시점에 염산공급 스위치를 차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 ③ 작업 담당자가 스위치를 공급 상태로 고정시킨 후 그대로 두었고, 이에 따라 공장 내 염산 저장탱크에 최대 용량을 초과하는 염산이 계속 공급되어
- ④ 염산 약 100L가 흘러 넘쳐서, 그 중 일부가 이 사건 공장 1층의 천장을 통해 흘러내려, 1층의 B전자 레이저 드릴 두 대에 직접 떨어지거나 그 주변 바닥에 떨어져 기화된 염산 기체에 의하여 레이저 드릴의 주요 부품들이 부식되어 손상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 사건에 대한 하급심의 판례요지는 다음과 같다.

‘환경배상책임보험약관과 환경오염피해구제법에 따라 ‘환경오염피해’란 “시설의 설치·운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소음·진동, 진동이 그 원인 중 하나가 되는 지반침하(광물채굴이 주된 원인인 경우는 제외)로 인하여 제3자의 생명, 신체, 재산 등에 대한 피해가 발생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은 우선 ‘환경오염’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어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보험계약과 같은 환경배상책임보험에서 말하는 ‘대기오염’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9) 서울중앙지원 2019.10.25. 선고 2017가합586517 판결.

대기오염물질이 단순하게 배출되는 것을 넘어서 적어도 “사람의 활동에 의하여 대기오염물질이 외부로 배출되어 확산됨으로써 불특정 다수인의 생명, 신체, 재산 또는 환경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상태”에 이르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한다.

환경 관련 법률의 입법 목적 등을 고려할 때, 환경오염물질이 대기오염이나 수질오염 등 ‘환경오염’이 매개되지 않은 상태에서 직접적으로 특정한 사람 또는 물건에 도달함으로써 곧바로 제3자에게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경우를 국민의 생활환경 또는 자연환경에 위해를 주는 상태라고 보기 어렵고, 이러한 경우까지 환경배상책임보험에서 말하는 ‘환경오염’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 사건 보험계약 환경배상책임보험 보통보험약관이나 환경오염피해구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환경오염피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위해서는, 먼저 ‘대기오염 등으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거나 피해를 줄 수 있는 상태(환경오염)’가 되어야 하고, 나아가 ‘그러한 상태로 인하여 제3자의 생명, 신체, 재산 등에 대한 피해가 발생(환경오염피해)’하는 2단계 구조를 거쳐야만 한다고 보았다.

위와 같은 환경오염 및 환경오염피해에 관한 각 법률상 정의규정, 대기오염 및 대기에 관한 일반적 정의규정 등의 문언자체의 해석과 입법취지 등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보험계약 보통보험약관에서 규정한 대기오염의 ‘대기는 폐쇄되거나 한정된 공간에 머물고 있는 공기가 아닌 적어도 “장소적으로 제한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이 흡입하거나 접촉할 수 있을 정도로 노출될 수 있는 상태의 공기”를 말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한다. 따라서 환경에 유해한 오염물질이 외부로 배출되어 확산되지 않은 상태에서, 즉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유해물질로 인하여 직접적인 피해를 입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 이로 인하여 입은 손해는 환경배상책임보험이 보장하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에서의 사고는 환경배상책임보험에서 사고라고 오염피해라고 판단하는 대기오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다.’

해당 관례에서 취하는 환경배상책임보험약관과 환경오염피해구제법상의 보험자가 부보하는 환경오염피해란 우선 환경오염이 선행되고 이 환경오염으로 인하여 제3자의 생명, 신체, 재산 등에 대한 피해가 발생하는 상태로서의 단계를 의미한다. 그러므로 물질의 배출, 누출, 유출 내지는 넘침(overflow)으로 인한 손해는 그

자체는 소위 오염사고(contamination)<sup>10</sup>로서 동법에서 대기, 토양, 해양 등의 오염의 상태를 거쳐 이를 매개로 제3자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오염으로 인한 피해가 생긴 것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는 취지이다. 위 사건과 같이 염산의 누출로 직접 기계에 떨어지거나 기화된 염산에 의해 부식하는 것은 환경오염피해(pollution)가 아니다. 매체인 대기, 토양 또는 해양을 통하지 아니하고 생긴 직접적인 피해<sup>11</sup>)는 환경배상책임보험으로 담보하지 않는다는 해석이다. 관련 법령과 환경배상책임보험약관의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판단된다.

## 2. 환경배상책임보험에서의 손해의 의미와 범위

환경배상책임보험에서의 손해는 환경오염피해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피해라 함은 재산, 명예, 신체상의 손해를 입는 것을 의미하고, 그 중에서도 민사법상 손해란 일정한 사건이나 사태로 인하여 사인이 입은 모든 불이익 또는 법익에 대한 불이익을 뜻한다. 그러므로 피해의 개념이 손해의 개념을 포섭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환경배상책임보험에서의 손해란 환경오염피해구제법에서 지시한 환경오염피해로 인하여 피해자의 법익에 발생한 불이익이라고 판단된다. 환경오염책임구제법이 민사법상의 손해배상뿐만 아니라 피해구제라는 측면의 공법상의 책임을 포함하여 정한 규범이라는 특성을 고려하면 환경오염피해는 환경오염으로 인한 생명, 신체 및 재산에 생긴 손해로 인식이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서의 손해는 금전적인 가치로 평가가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동법 제 13조 및 제14조에 따라 원상회복이 가능한 범위에서의 금전배상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손해의 금전으로의 산정가능성은 손해보험에서의 피보험이익을 인정하게 되는 매우 중요한 기준이다.

환경오염 중 주목이 되는 것 중 하나는 해양오염이다. 바다를 삼면으로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해양환경이 가지는 경제적 의미가 크다. 예컨대 태안에서의 유조선 충돌로 인한 기름유출사건으로 서해안의 해양자원이 오염되어 경제생활에

10) 오염원이 직접적으로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상 피해를 준 것을 보험자의 면책으로 한 실무상 사례는 2017년 8월 ○일자 광양항 ○○ 구간에서 발생한 사고로 '중질유 이송과정에서 플렉서블 호스의 연결부분 파손으로 인한 선박 오염은 담보하지 않았음.

11) 이와 같이 환경매체를 통하지 않은 직접적인 손해는 환경배상책임보험에 특별약관을 추가하여 오염사고를 담보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는 있다.

끼친 피해는 자못 컸다. 이러한 기름유출사건으로부터 생겨난 환경오염피해가 얼마나 큰 것인지는 이 사건을 통해 명백해졌다. 해양오염의 경우를 규정된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의 ‘해양오염이란 해상에 유입되거나 해양에서 발생하는 물질 또는 에너지로 인하여 해양환경에 해로운 결과를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상태를 말한다.’고 한 것에서 해안가의 공장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는 환경오염피해가 될 수 있음에 대하여는 논의의 여지가 없지만, 공장에서 배출되어 해양으로 유입되는 온배수가 인근 양식장에 주는 피해를 오염피해라고 할 수 있을 것인지 문제가 될 수 있다. 환경오염피해구제법상의 오염피해라고 확정하여야 환경책임에서 부보가 되는 손해의 범주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공장시설이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정한 시설에 해당되는 한 온배수로 발생한 재산상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는 일반적으로 환경오염피해구제법이 적용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이것이 환경배상책임보험에서 말하는 환경오염피해에 해당한다고 보지는 않는다. 환경배상책임보험에서의 환경오염피해에는 환경배상책임보험약관 제4조 제10호에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로 냉수, 온수로 인한 피해가 포함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환경오염피해구제법의 대상이 되는 사안과 환경배상책임보험약관에서 정한 부보의 범위가 겹치는 것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환경배상책임보험에서 손해의 의미와 범위를 정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확인해야 할 것이지만, 어느 시기를 기준으로 손해를 정할 것인가가 보험운용에서는 또 다른 중대한 문제에 해당한다. 환경배상책임보험의 담보기준은 손해배상청구기준(claims made policy)<sup>12)</sup> 또는 표명담보기준(manifestation trigger)<sup>13)</sup>으로 운영하여 적어도 보험사의 보험금 변동성을 감안하여 이것이 근본적으로 보험료의 산출과 적용이 가능하도록 설계하였다. 이러한 근거는 환경배상책임보험약관 제6조 제1호에 ‘피보험자와 회사가 손해배상 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먼저 접수한 쪽의 손해

12) 이 기준은 1980년대 미국의 경험을 기반으로 생성된 것으로 보험기간 중에 오염사고가 발생하고 그에 따라 보험금지급청구가 이루어져야 보험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이기형, 환경책임법 주요내용과 보험제도 운영방안 고찰, 보험연구원, KiRi weekly 342호, 2015.7.20. 8면).

13) 독일의 환경배상책임보험에서 채택하고 있는 것으로 보험가입 기간 중에 담보하는 사고라고 정부나 공적인 평가기관의 증명이 있는 경우 이를 보험사고로 간주하는 방식이다, Bruck/Möller/Robert Koch, VVG, Umwelthaftpflicht-Modell 2009, De Gryuter, 2013, S. 1113.

배상청구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가 접수한 경우에는 명백한 증명자료가 없는 한 그 사실을 회사에 알린 날을 손해배상청구가 처음 제기된 날로 봅니다.’로 규정하여 손해배상청구를 기준으로 함을 명백히 하고 있다.<sup>14)</sup>

통상적으로 책임보험에서의 손해도 일반보험과 마찬가지로 위험이 현실화되어 그것이 보험사고로 발생한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책임보험은 그 특성상 제3자인 피해자가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3자로부터 청구가 없으면 손해사고를 보험사고라고 확정하는 것에 실익이 없을 수 있다. 그러한 취지에서 보험자의 책임을 발생시키는 조건의 실현에 해당하는 보험사고 시점을 기준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있기도 하다. 즉 손해를 일으킨 사고 그 자체를 보험사고로 보는 손해사고설<sup>15)</sup>, 피보험자가 피해자인 제3자로부터 피보험자가 그 책임에 관하여 배상청구를 받은 것을 보험사고로 판단하는 손해배상청구권설<sup>16)</sup>, 손해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법률상의 책임을 부담한 것을 보험사고로 하는 책임부담설<sup>17)</sup>, 제3자에 대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할 채무 자체가 확정되는 것을 보험사고로 보는 채무확정설<sup>18)</sup>, 피보험자가 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을 이행한 것을 보험사고로 보는 배상의무이행설<sup>19)</sup>이 있다.

책임보험은 손해사고로 인하여 제3자가 청구를 하게 되면 그 제3자의 책임추궁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부정하거나 손해의 범위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제3자의 청구를 방어하기도 하고 또는 이 과정에서 손해배상액이 확정되기도 한다. 책임보험의 본질은 가해자인 피보험자의 배상책임으로 인하여 생긴 재산상의 손실을 보험자로부터 보전받고자 하는 취지를 담고 있으므로, 이 과정에서 재산상의 손실이 생기는 지의 여부를 판가름하는 기점은 제3자에 의한 배상청구이다. 더욱이 피보험자는 상법 제722조에 의거하여 제3자로부터 배상의 청구를

14) 이와 동일한 취지의 약관으로는 제조물배상책임보험약관이 있다.

15) 다수설로서 박세민, 보험법, 박영사, 2017, 635면 ; 이기수·최병규·김인현, 제9판 보험·해상·항공운송법, 박영사, 2015, 294면; 양승규, 제5판 보험법, 삼지원, 2004, 347-348면; 정희철, 상법학(하), 박영사, 1990, 455면.

16) 김은경, 보험계약법, 보험연수원, 2016, 508-509면; 최기원, 상법학신론, 박영사, 2005, 357-358면; 西島梅治, 責任保險法の研究, 同文館, 1968, 34-37면.

17) 채이식, 상법강의(하), 박영사, 2003, 584면; 손주찬, 상법강의(하), 박영사, 2005, 641면; 이범찬, 상법(하), 삼영사, 2004, 507면.

18) Kisch, Handbuch des Privatversicherungsrechts, Bd. 2, 1920, S. 113, in; 최준선, 제9판 보험·해상·항공법, 삼영사, 2015, 281면; 곽평석, 책임보험계약법론, 삼영사, 1990, 170면.

19) Kübel, ZfVR, S. 98 in; 곽평석, 전게서, 171면.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보험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므로 상법의 본 규정은 배상청구설을 뒷받침하고 있다고 본다. 그러한 취지에서 볼 때 환경배상책임보험약관 제6조의 손해배상청구시를 기준으로 담보기준을 정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 3. 환경책임약관상 보상할 손해의 범위

환경배상책임보험약관 제3조에 따르면 보험증권에 기재된 시설의 운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환경오염피해로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에게 손해배상청구가 제기되어 가해자에게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한다고 정하고 있다. 동 약관에 따르면 보험자가 보상할 손해는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할 책임을 지는 법률상의 손해배상금(제3조 제1항 제1호)과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지출한 비용(제3조 제1항 제2호)을 포함하는 것이다.

피보험자가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하여 보험사가 모든 손해를 보상하는 것은 물론 아니다. 이것이 환경배상책임보험약관에서 정하는 담보사고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보험사가 보상할 비용손해에 대해서는 동 약관 제3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마목 사이에 다음과 같이 다섯 가지 비용을 제시하고 있다. 즉 비용손해로서 손해방지비용(가목), 권리보전비용(나목), 소송 및 중재비용(다목), 공탁보증보험료(라목)와 협력비용(마목)을 규정하고 있다.

피보험자가 지출한 손해방지비용이란 환경배상책임보험약관 제16조 제1항 제1호에서 지시한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필요비용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을 말한다. 이는 상법 제680조와 동일한 것이다. 다만 약관에서는 단서로서 사업장 부지 내의 오염정화비용은 보상하지 않겠다고 하여 애초에 오염정화비용을 손해방지비용에서 제외하였다. 사업장 부지 내의 오염이 사업장 외부로의 오염으로 확대될 가능성에 따라 오염을 정화하는 과정이 필요하고 이것이 손해의 확산을 막는다는 측면에서는 손해방지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는데 여기에서 보험사가 손해방지비용으로 부보하지 않는다는 의미로서의 핵심은 사업장 부지 내라는 것이 그 판단의 기준이라고 본다.

비용손해로서 권리보전비용이란 약관 제16조(손해방지의무) 제1항 제2호에 따라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그 권리를 지키거나 행사하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을 의미한다. 소송비용 또는 중재비용에 해당하는 비용손해란 피보험자가 지급한 소송비용, 변호사비용, 중재, 화해 또는 조정 에 관한 비용이 이에 해당한다. 또한 공탁보증보험료는 보험증권상에 보상한도액 내의 금액에 대하여 법원에 납부하는 공탁금을 대신하는 보증보험의 보험료로서 이 역시 비용손해로 포함시켰다. 그 외에도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를 받았을 때 보험사에 이를 통보한 후, 보험사의 요구에 따라 협조함으로써 지출하게 되는 비용인 협력비용 역시 비용손해로 본다.

### III. 환경배상책임보험에서의 손해방지의무와 비용

#### 1. 환경배상책임보험에서의 손해방지의무의 이행의 범위

##### (1) 손해방지의무의 특성

상법상 손해방지의무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적극적으로 손해가 방지되거나 경감이 되도록 노력을 하여야 할 의무를 말한다(상법 제680조 제1항 본문). 손해방지의무에서 손해가 방지되거나 경감되도록 적극적인 작위를 요구하는 취지는 이미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과 실로 손해를 방지하지 않거나 경감시킬 노력을 하지 않은 채 보험자의 부담을 기증시키는 부작위 상태에 있는 것이 이른바 손해의 확장이라고 보고, 도덕적 해이를 억제하기 위함인 동시에 보험의 단체성을 보호하는 공익적인 필요에 의한 것이다.

손해방지의무는 보험계약자에게만 부여되는 의무가 아니고 보험계약관계자인 피보험자에게도 동일하게 지우는 의무로서 보험계약이 가지는 사행계약적 성질에 비추어 보험계약상 이익을 가지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형평의 견지에서 법에 의해서 인정된 법적 의무로서의 성질을 가진다.<sup>20)</sup> 다만 손해방지의무를 이행할 것인지는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보험사고발생 당시에 그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인식하여야 가능한 것이다. 여기서의 손해란 해당 보험사고로

20) 박세민, 전게서, 424면; 최준선, 전게서, 215면; 정동윤, 전게서, 588면; 양승규, 전게서, 231면; 최기원, 전게서, 306면.

인해 피보험자에게 직접적인 재산상 손실이 생기는 것뿐만 아니라, 적어도 그로부터 간접적으로나마 비용이 발생하는 것도 포함한다.<sup>21)</sup>

손해방지의무를 이행할 것인지는 상법 제680조의 법문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보험사고 발생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그러나 사정에 따라서는 특정한 사건이 보험사고인지를 확정하기 곤란해서 과연 손해방지를 위해 노력을 해야 할지를 결정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특히 책임보험의 경우는 피보험자가 배상청구를 당할 수 있는 사고, 즉 원인사고가 발생한 때로부터 이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책임보험의 특성상 해당의무 이행의 취지를 제대로 반영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상법 제680조에서 언급한 보험사고는 책임보험의 경우에는 손해사고로 이해하여야 한다. 판례<sup>22)</sup>에 따르면 ‘자동차책임보험의 피보험자가 사고발생시 자신의 법률상 책임 여부가 판명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보험자가 손해확대방지를 위한 긴급한 행위를 하였다면 이로 인하여 발생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도 손해확대방지를 위한 비용으로서 보험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고 한 취지에 따르면 자동차사고발생만으로 자신이 법률상 책임을 부담할지 여부가 판명이 안 난 상태임에도 손해가 확대될 것을 방지할 의무가 있음을 확인해주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손해방지의무는 적극적으로 그 의무를 이행할 근거가 되기도 한다.

손해보험에서 일반적으로 부여되는 손해방지의무와 책임보험에서의 방어의무는 별개의 것이다. 방어의무는 상법 제720조 제1항에 따라 피보험자가 제3자의 청구를 방어하는 것이라고 한다. 이는 제3자가 피보험자에 대하여 보험계약에서 정한 사고로 인한 인적 또는 물적 손해에 대하여 배상청구를 행사할 경우에 근거 없는 청구를 방어하게 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한다. 환경배상책임보험, 역시 손해보험의 일종이기 때문에 환경배상책임보험의 피보험자는 손해방지의무뿐만 아니라 방어의무를 부담하는 주체가 된다.

손해방지의무와 방어의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손해방지의무의 이행으로 생긴 비용을 손해방지비용이라고 하고, 책임보험에서의 방어의무를 이행함으로써 발생한 비용은 방어비용이라고 한다. 손해방지비용은 손해보험에서의 보험의 목적이 아닌 반면, 방어비용은 그 자체로 책임보험의 보험의

21) 이기수·최병규·김인현, 전거서, 226면.

22) 대법원 1994. 9. 9. 선고 94다16663 판결.

목적이라는 것(상법 제720조 제1항 전문)에서도 큰 차이가 있다. 판례에서도 양자 사이의 차이를 명백하게 구분하고 있다. 즉 ‘상법 제680조 제1항에 규정된 “손해방지비용”은 보험자가 담보하고 있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보험사고로 인한 손해의 발생을 방지하거나 손해의 확대를 방지함은 물론 손해를 경감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에 필요하거나 유익하였던 비용을 말하는 것이다. 그런데 동법 제720조 제1항에 규정된 “방어비용”은 피해자가 보험사고로 인적·물적 손해를 입고 피보험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한 경우에 그 방어를 위하여 지출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필요비용을 말하는 것이므로 이 비용은 서로 구별되는 것이다.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보통보험약관에 손해방지비용과 관련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규정이 당연히 방어비용에 대하여도 적용된다고 할 수는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sup>23)</sup>

## 2. 환경배상책임보험에서의 손해방지비용과 보상범위

### (1) 약관에서의 근거

책임보험에서 제3자인 피해자에게 부담할 책임을 지는 법률상의 손해배상은 보험의 목적에 포함되는 것이지만, 비용손해가 곧 보험의 목적인 것은 아니다. 즉 비용손해의 특징상 이는 제3자의 손해배상에 포함되는 직접적인 금원은 아니지만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배상할 손해와 관련하여 지출하게 된 비용이므로 책임보험에서 해당비용이 보험의 목적에 포함되는 경우도 있고, 보험의 목적 외의 범주에서 정책적 측면에서 보험법상 보상하기로 하는 경우도 있다. 판단컨대 환경배상책임보험약관 제3조 제1항 제2호에서 언급한 비용손해 중 손해방지비용은 그야말로 상법 제680조에서 언급하는 손해방지의무의 이행으로 인해 발생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으로서 보험의 목적에 포함이 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권리보전비용, 소송 및 중재비용은 책임보험에서 광의의 의미에서의 피보험자의 방어 의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방어비용의 일종에 해당한다. 다만 통상적으로 권리보전비용은 제3자에게서 배상을 받는다는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권리행사와

23) 대법원 2006. 6. 30. 선고 2005다21531 판결;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다22106 판결.

관련한 비용인 반면, 소송 및 중재비용은 제3자의 청구에 대한 방어차원에서의 소극적인 권리행사와 관련된 비용으로 보인다. 다만 소송 및 중재 또는 조정을 제기하는 경우는 동 약관 제1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미리 회사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비용손해의 부담범위와 관련해서 주목이 가는 약관의 규정은 제13조 보험금의 지급한도에 관한 것이다. 환경배상책임보험약관에서는 피보험자에게 자기부담금을 정하고 있는데 동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손해배상금에 대한 보상은 보상한도액으로 하되 자기부담금이 약정된 경우에는 그 부담금을 초과한 부분만 보상하므로 자기부담금보다 적은 손해배상금에 대하여는 근본적으로 보상을 하지 않게 된다. 이에 덧붙여 비용손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지급한도를 정하고 있다. 법률상의 손해배상금의 보상액과 손해방지비용의 합계액은 보험금의 지급한도액인 보상한도액 내에서만 보상한다는 점(동조 제1항 제2호), 법률상의 손해배상금의 보상액과 소송비 또는 중재비와 공탁보증보험료 등의 비용의 합계액이 보험금의 지급한도액인 보상한도액 내에서만 보상한다는 점(동조 제1항 제4호)과 권리보존비용과 협력비용은 비용의 전액을 보상한다는 점(동조 제1항 제3호)이 이에 해당한다.

이를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 (손해배상금 - 자기부담금<sup>24</sup>) + (손해방지비용 + 소송비용 또는 중재비용 + 공탁보증보험료) < 보상한도
- 권리보존비용과 협력비용 : 전액지급

이는 손해방지비용과 보상액이 보험금액을 초과한 경우라도 보험자가 필요하고 유익하였던 손해방지비용의 전액을 부담한다고 정한 상법 제680조의 취지와는 다른 것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환경배상책임보험약관 제13조의 규정은 상법 제663조의 보험계약자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을 위반한 것은 아닌지에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상법 제663조에 따르면 당사자인 보험계약자와 보험자의 특약으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를 불이익하게 변경하지 못하는 것으로

24) 환경배상책임보험에서 자기부담금은 보상한도액에 0.5%를 곱한 금액이다.

하는 편면적 강행규정을 제시하고 있다. 사실상 환경배상책임보험약관에서 정한 손해방지비용을 보상액과 합친 것이 보험금액의 한도 내에서만 보험자가 지급하는 것으로 하는 것은 피보험자를 불이익하게 하는 것이므로 마치 보험금 지급방식에서 상법 제663조를 위반한 규정으로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상법 제663조 단서에 따르면 재보험 및 해상보험 기타 이와 유사한 보험에는 보험계약자 등의 불이익금지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여기에서 재보험 및 해상보험은 공통적으로 기업보험이다. 이와 유사한 보험은 이 규정의 취지상 기업보험을 의미한다고 보인다. 즉 동조에서 언급한 재보험이나 해상보험은 기업보험의 일종으로 예시에 불과한 것으로서 이를 일반화 하면 기업보험은 상법 제663조가 적용되지 아니한다는 것이다. 환경배상책임보험은 책임보험의 일종인데 계약 당사자인 보험계약자가 환경오염의 위험성이 높은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이므로 기업보험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환경배상책임보험약관 제13조와 같은 보험금지급방식은 계약당사자의 특약으로 정할 수 있는 것으로써 상법 제663조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상법 제663조의 기업보험에 대한 적용 가능성을 놓고 판례<sup>25)</sup>도 동일한 해석을 하고 있다. 즉 ‘상법 제663조에 규정된 ‘보험계약자 등의 불이익변경 금지원칙’은 보험계약자와 보험자가 서로 대등한 경제적 지위에서 계약조건을 정하는 이른바 기업보험에 있어서의 보험계약 체결에 있어서는 그 적용이 배제된다.’고 한다. 그러한 측면에서 환경배상책임보험에서 손해방지비용의 보상한도에 대한 보험금지급 관련 약관의 적법성에는 문제가 없다.

환경배상책임보험약관 제13조 제1항의 제2호에 따르면 손해방지비용과 손해배상금의 합계액을 보상한도액으로 보상하게 명시되어 있다. 이는 보통의 배상책임 보험과는 다르다. 배상책임 표준약관은 손해방지비용에 대하여 전액을 보상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기 때문이다. 환경배상책임보험과 동일하게 의무보험의 일종인 수련시설배상책임보험, 어린이놀이터배상책임보험, 재난배상책임보험 등의 경우는 또 다른 보험금지급형태를 취하고 있다. 각각의 약관에 따르면 수련시설배상책임보험은 손해방지비용, 조사비용 및 보험사에 대한 협력비용은 한도 없이 전액지급하고, 어린이놀이시설배상책임보험과 재난배상책임보험은 손해방지비용,

25) 대법원 2006. 6. 30. 선고 2005다21531 판결.

권리보존비용 및 보험사에 대한 협력비용 역시 한도 없이 전액 지급한다. 이러한 차이는 환경배상책임보험이나 수련시설배상책임보험 또는 어린이놀이터배상책임보험이 모두 의무보험에 해당하지만, 환경배상책임보험과 수련시설배상책임보험 또는 어린이놀이터배상책임보험은 손해방지의 규모에서 현저한 차이가 있으므로 이를 동일한 잣대로 판단하여 손해방지비용 등에 대한 담보범위를 정할 수는 없다고 보인다. 즉 환경배상책임보험은 다른 배상책임보험과 다르게 손해를 방지하거나 경감하는 데 소모되는 비용이 실제 발생한 손해의 배상금보다 훨씬 클 가능성을 있음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임의보험이지만 기업보험에 해당하는 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보험의 경우는 역시 위 여타의 의무책임보험과 같이 손해방지비용, 권리보존비용 및 보험사에 대한 협력비용이 한도 없이 전액 지급된다.

## (2) 판례의 경향

환경배상책임보험에서의 손해방지의무를 이행함에 따라 발생한 손해방지비용에 관한 것을 직접 다룬 판례는 없다. 다만 손해보험에서 일반적으로 다루는 손해방지의무에 관하여 판례가 형성된 바 있는데 이에 따르면 피보험자가 손해확대방지를 위한 긴급한 행위를 하였다면 이 역시 손해방지의무를 이행한 것이고<sup>26)</sup> 이를 위해서 필요하거나 유익한 비용은 손해방지비용으로 처리해야 하는 기본적인 원칙을 밝히고 있다. 이러한 취지는 환경배상책임보험에서도 동일하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환경배상책임보험에서 어디까지를 손해방지비용으로 처리할 지에 대한 문제가 해당 보험의 시행 이후 제기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하여 심도있는 논의가 있었거나 판례가 형성된 바는 없었다. 다행스럽게도 최근에 손해방지비용의 안정여부와 그 범위와 관련하여 참고할 만한 하급심 판례<sup>27)</sup>가 만들어졌다.

음식점 주방의 천정에서 누수가 있어 물받이를 5개를 설치하였으나 계속되는 누수로 인하여 음식점을 15일간 휴업을 하고 주방과 홀 수도공사, 주방바닥 보수와 벽처리, 철거와 상하수도 공사, 기타 페인트까지 공사비용 전액을 손해방지비용으로

26) 대법원 1994. 9. 9. 선고 94다16663 판결.

27)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6.28 선고 2017가합104799판결.

청구한 사건이었다. 누수는 이웃 간의 분쟁을 일으키는 사건이 될 수 있는데 위 음식점 주인인 피보험자는 앞서 언급한 비용 전체를 손해방지비용으로 청구한 것에 대하여 보험사는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한 바 있다.

누수를 보험사고로 보는 한, 누수로 인한 손해방지비용에 대하여 지급이 가능한 기준으로는 ①누수를 일시적으로 방지하는 비용, ②원인을 찾아 이를 제거하는 비용을 법원에서는 손해방지비용이라고 하여 누수와 관련하여 기준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피보험자가 누수 원인을 제거할 목적의 '직접적으로 지출한 비용'만을 손해방지비용으로 인정한 것이다. 해당 사건과 관련한 손해방지비용의 구체적인 지급대상으로는 누수를 일시적으로 방지하고 기타 손해를 막고자 한 지하 물받이 공사(임시공사), 누수가 의심되는 수도관을 외부로 노출시키기 위하여 주방 및 홀 수도공사, 바닥 타공 및 타일공사<sup>28)</sup>, 바닥 아래 있는 수도관 중 정확한 누수 부분을 모른 상태에서 바닥을 철거하여 수도관을 확인하는데 따른 바닥 철거 공사 및 누수 원인인 배관을 교체한 배관 공사가 해당된다.

그러나 누수와는 직접적인 연관관계가 없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향후 다른 누수를 방지하기 위한 방수 공사 및 시멘트 공사비용, 위의 공사 이후 시행한 타일 공사 및 주방장비 이전 설치비용은 직접적인 누수방지비용으로 볼 수 없어 손해방지비용의 지급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해당사건을 통해 손해방지비용으로 보험사가 담보하기 위해서는 우선 ①긴급성이 요구되고, 그 손해방지와의 ②직접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더불어 그 비용지출의 원인이 문제가 된 사건(해당 사안에서는 누수)에서 보전대 일시적으로 방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원인을 찾아서 이를 제거하는 비용 역시 손해방지비용에 포함된다.

### (3) 손해방지의무 이행 대상여부 판단의 문제

환경배상책임보험에서 손해방지의무의 이행 대상이 되는지의 여부는 사안마다 모두 사실관계가 다르고 오염원인이 된 물질의 파급력이 다르므로 이행행위의 양태는 다를 수밖에 없다. 다만 손해방지의무 이행의 특성상 손해가 발생하면 즉각적으로 손해발생이라고 인식되는 한 긴급한 방제행위 등을 해야 하는 긴급성이

28) 예컨대 누수 발생장소를 정확히 알지 못한 상태에서 이를 탐지하기 위한 비용으로 판단된다.

요구되고 앞서 판례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손해 자체의 방지나 확대를 방지하는 일련의 행위로서 그 행위의 양태가 직접적인 것뿐만 아니라 간접적인 방지행위도 포함된다.<sup>29)</sup> 그 노력의 정도는 자기의 이익에 대한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노력하는 경우와 같은 정도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행행위가 반드시 손해의 방지나 경감의 효과를 나타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환경배상책임보험에서 특기할 만한 몇 가지 사고를 통해서 손해방지의무의 대상인지의 여부와 손해방지비용으로 보험사가 지급해야할 대상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하고자 한다.

<사안 1>

- 피보험자 사업장(A화학회사) 내 GL300(가소제)이 최종공정을 마친 후 저장조로 이송 작업 중 작업자의 저장조 레벨케이지 측정 오류로 인해 GL300이 저장조 상부의 환풍기에서 흘러 넘쳐서 GL300이 우수 배출로를 통해 800m 거리의 OO강으로 유출(약 500L)됨
- 외부 유출 방지를 위해 1m 높이의 Dike가 설치되어 있었으나, 사고 당일 비가 와서 우수 배출로가 개방되어 있던 상태임
- 피보험자는 사고발생일부터 3일간 외부 및 내부 인력을 동원하여 방제작업 실시하였고 본 건 사고에 대한 제3자의 손해배상청구는 없음.

위 사안은 피보험자측 직원의 업무상 과실로 발생한 사고이므로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보험사고이다. 환경배상책임보험약관 제4조 제4호에 따라 본 건 사고의 손해액 중 A화학회사 자산 및 부지에 위치한 비상저류조 방제비용은 보험자 면책사항이다. 이는 약관의 보험의 담보대상이 아닌 피보험자가 사용·관리하는 자산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사업장 내의 오염처리비용은 손해방지비용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여기서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GL300가 외부로 유출되어 흘러가 생긴 OO강의 오염 방제비용은 손해방지의무의 일환으로 생겨난 손해방지비용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이다. 3일간 진행된 구외 복구로 인해 발생한 비용은 손해방지비용이 아닌 그 자체가 복구비용(Wiederherstellungskosten)에 해당한다.

29) 대법원 2018.9.30. 선고 2015다209347 판결.

<사안 2>

- 피보험자 사업장(B송유관회사) 내 저유탱크(초저유탱크)에 연결된 출하배관이 파손되어 약 66,000L의 유류가 유출(추정컨대 출하압력의 영향에 의해 파손)
- 내부 방유벽 및 우수분리 장치가 있어 바로 회수작업을 진행하였으나, 우수분리조 배수관 주변의 균열부위로 유류 유출(약 1,000L), 인근 하천으로 유입되어 하천, 토양 및 인근 논, 밭, 양식장, 양봉장 등 오염피해 발생하자 피보험자는 자체인력을 투입하여 방제작업을 진행함
- 피보험자는 오염된 하천 및 (외부)부지에 대해서는 정화 및 정리작업을 완료한 상태임

출하배관의 파손으로 인하여 송유관회사에서 흘러나온 유류로 하천, 토양 및 양식장과 양봉장에 생긴 오염피해를 방제한 것은 시간적인 긴급함을 확인해야 할 것이지만 통상적인 의미의 방제작업이라고 할 경우 사업장 구내의 경우라면 피보험자의 재물에 대한 손해이므로 보험자 면책사항이지만 구내에 흘러나온 유류를 그대로 방치할 경우 오염의 확대가 불가피한 경우라면 이는 그 긴급성에 따라 손해확대의 방지에 해당하는 손해방지의무 이행으로 판단되어 그 비용은 손해방지비용이 된다. 또한 구외의 경우엔 오염이 된 것을 방제하는 것이라면 이는 원상회복에 해당하여 손해배상책임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이다.

<사안 3>

- 피보험자가 사업장(C정유사) 내 양하배관 일상점검 중 부두 입구 맨홀(MH-1)에서 방커C유로 추정되는 유류의 누출 발견함
- 부두 방커C유 지하양하배관(14", 8") 노후로 인한 핀홀 발생으로 기름이 누출된 것으로 추정되며 MH-1, MH-2에서 누출 확인됨
- 피보험자가 부두입구 MOV(전동밸브) 및 육상밸브 차단, MH-1~MH-2까지 누출이 확인된 기름을 펌프카로 회수하였고, 토양굴착 후 누출지점 파악 및 배관 긴급보수함
- 토양 오염구간에 대한 복원 공사 예정임.

이 사안에서도 사업장내 부지의 오염정화비용은 보험자의 면책사항이므로 보상하지 아니하나, 누유 부위를 찾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및 긴급배관교체비용의 경우 손해방지비용에 해당하는 지가 의문이다. 누유에 대한 탐지 및 부위를 찾기 위한 굴착비용 등은 소위 손해를 증명하기 위한 비용으로서 손해방지비용이라고 볼 수 없다.<sup>30)</sup> 다만 긴급배관교체비용은 손해방지비용에 해당한다. 이는 지중에 매립된 배관에서 누유가 발생한 것으로서 손해의 확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하게 교체한 비용이기 때문이다. 이와 동일한 취지로서 누수의 경우 누수의 원인을 제거하기 위하여 직접적으로 지출한 비용을 손해방지비용으로 본 판례와 맥락이 같다.<sup>31)</sup>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판례의 사안에서 음식점 주방에서의 누수라는 사고의 속성과 송유관 또는 저장탱크에서의 누수는 사고나 집행비용의 규모 면에서 일반적인 비교는 그 자체로 위험한 것일 수 있다. 해당 판례에서 시사하는 바는 타인의 손해가 될 만한 것의 원인 제거를 하는 긴급한 손해방지를 위한 비용의 지출이라는 측면에서 손해방지의무의 이행과 비용발생 부분이다.

이 건에서 사업자가 토양 오염구간에 대하여 예정하고 있는 복원 공사비는 사업장 내 또는 피보험자가 소유, 점유, 관리하는 곳인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재물에 생겨난 손해이므로 보험자가 면책이 되고, 사업자 외의 경우인 구외는 복구비용으로 판단된다. 추가로 오염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배수로를 차단하거나 지중 차단설비를 설치하는 것은 사업장 내의 경우엔 손해방지비용에 해당한다.

#### IV. 맺는 말

환경오염피해구제법에 근거하여 정책적으로 출시된 환경배상책임보험은 의무보험이고 기업보험이다. 환경배상책임보험의 취지는 유해화학물질로부터 생겨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보험이다. 환경배상책임보험에 의하여 보험자는 환경오염피해로 인하여 제3자에게 부담하게 될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한다. 다만 환경배상책임보험은 오염물질로 인한 직접손해를 담보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오염물질로 인하여 생활환경이나 자연환경이 피해(1차 피해)가 발생하고

30) 탐지비용이나 굴착비용 등에 대하여는 독일의 경우에도 담보대상이 아님.

31)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6.28 선고 2017가합104799판결.

그것이 다시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2차 피해)를 발생한 경우를 보험사고로 한다.

환경배상책임보험 역시 손해보험이므로 다른 손해보험들과 마찬가지로 손해방지의무를 피보험자가 부담하게 된다. 이때 손해를 방지하거나 경감하기 위하여 피보험자가 지출한 유익하고 필요했던 비용인 손해방지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손해방지비용은 상법 제680조에 의하면 손해배상금에 해당하는 보상액과의 합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경우에도 보험자가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그러나 환경배상책임보험약관 제3조 및 제16조에서는 자기부담금을 제외한 손해배상금과 손해방지비, 소송 및 중재비 및 공탁보험료 등을 합친 금액이 보상한도인 보험금액의 한도 내에서만 보험자가 지급을 담보한다고 정하고 있다. 추측컨대 환경오염피해가 손해사고로 인한 법률상 손해배상금보다 손해방지비용이 오히려 훨씬 클 경우가 있을 수 있어 일반적인 손해방지비용의 지급에 관한 것을 적용하기 곤란한 것에서 이와 같은 방식을 취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상법 제680조 규정의 취지와는 달라서 약관의 적법성 논란이 있으나, 환경배상책임보험은 기업보험이므로 계약당사자간에 계약의 내용을 합의할 수 있다. 그러므로 환경책임보험약관 제3조 및 제16조는 상법 제663조의 보험계약자 등의 불이익변경 금지 조항에 저촉되지 아니한다.

환경배상책임보험에서 무엇을 손해방지비용으로 확정할 것인지는 그 사안마다 다르다. 보험자는 오염피해사고에 대한 탐지비용, 굴착비용, 유출된 유류의 제거비용은 손해방지비용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통상적으로 방제비용이라고 하는 것도 그것이 사업장 외에서 이루어지는 경우의 방제는 복구비용일 가능성이 높다. 그러므로 사실관계와 일일이 따져 보아야 한다. 오염확산방지비용은 그것이 타인의 손해로 확산될 여지가 있다고 판단되어 하게 되는 행위로 인한 비용은 사업장 내라 할지라도 손해방지비용으로 포함될 수 있다.

환경배상책임보험의 경우 피해 원인이 다양하고 광범위하므로 그에 대한 예측 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표준손해방지의무 기준”을 도입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환경배상책임보험이 그 의미를 파악하기에는 동 보험이 시장에 등장한 것이 겨우 3년 정도 되었다는 것에 문제가 있다. 현재 축적된 통계자료나 환경오염피해구제법상의 논의근거만으로는 표준안을

만들기가 당장은 용이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더욱이 관련된 사건들을 해결할 보험법적 논의가 이루어지지도 않았다. 소비자와 직접 관련이 있지 않으므로 보험계약자 등의 보호에 관심이 덜 기울이게 되는 기업보험이지만 보험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시간을 지켜보며 이에 대한 논의를 계속할 필요는 있다고 본다.

## 참고문헌

- 고평석, 책임보험계약법론, 삼영사, 1990.
- 김은경, 보험계약법, 보험연수원, 2016.
- 김홍균,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의 평가와 향후 과제”, 환경법연구, 제37권 제2호, 2015.
- 박세민, 보험법, 박영사, 2017.
- 손주찬, 상법강의(하), 박영사, 2005.
- 안경희, “환경오염피해구제법의 주요 내용 분석”, 민사판례연구 39권 2017.2.
- 안경희, “사업자의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무과실책임”, 경희법학 제50권 제4호, 2015. 12.
- 양승규, 제5판 보험법, 삼지원, 2004.
- 이기수·최병규·김인현, 제9판 보험·해상·항공운송법, 박영사, 2015.
- 이기형, 환경오염리스크관리를 위한 보험제도 활용방안, 보험연구원 정책연구자료, 2008.2.
- 이기형, 환경책임법 주요내용과 보험제도 운영방안 고찰, 보험연구원, KiRi weekly 342호, 2015.7.20.
- 이범찬, 상법(하), 삼영사, 2004.
- 전경운, “환경오염피해구제법상 사업자의 무과실책임”, 홍익법학 제17권 제2호(2016).
- 정희철, 상법학(하), 박영사, 1990.
- 채이식, 상법강의(하), 박영사, 2003.
- 최기원, 상법학신론, 박영사, 2005.
- 최준선, 제9판 보험·해상·항공법, 삼영사, 2015.
- 西島梅治, 責任保險法の 研究, 同文館, 1968.
- Bruck/Möller/Robert Koch, VVG, Umwelthaftpflicht-Modell 2009, De Gryuter, 2013.

<Abstract>

## A Study on the Performance of the Duty to Mitigate the Loss in Environmental Liability Insurance (ELI)

Kim, Eun Kyung\*

「The Pollution Remedy Act」 alleviates the victim's burden of proof through systematizing joint liability and the legal principle of presumptions of causation under the principle of no fault liability. It has suggested a guideline for the business operator who runs facilities with high pollution danger to buy environmental liability insurance in order to secure financial means for the performance of liability for compensation.

Environmental liability insurance is mandatory insurance and commercial insurance, and serves to solve problems caused by toxic chemicals. Through environmental liability insurance, the insurer covers the insured's liability for damage to a third party caused by pollution.

If pollution takes place, in case of environmental liability insurance the performance of the duty to mitigate the loss by the policyholder or the insured is identical with other indemnity insurances. Yet environmental liability insurance opts for paying expenses for averting the loss caused by the performance of duty to mitigate the loss within the limit of indemnity which is the insured amount. Since environmental liability insurance is a commercial insurance, 「Korean Commercial Code」 Art. 663 is not applicable and, therefore, there is no problem with the legality of the ELI clause. In addition, in environmental liability insurance, the decision of sue and labor charges differs in each case. For the insurer, the detection cost, the excavation cost and the spilled oil removal cost of a pollution

---

\*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Prof. Dr. iur.

accident is not included in expenses for averting the loss. It is highly possible that the general prevention cost, in case it is conducted outside a business place, is restoration cost. Therefore, each fact relevance should be considered.

**Key Words** : Environmental Liability Insurance, The Pollution Remedy Act, commercial insurance, the Duty to Mitigate the Loss, expenses for averting the loss.